

제 호



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대표자:
3.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:
4. 주사무소의 소재지(전화번호):
5. 지정일:
6. 인증지역:
7. 유효기간:
8.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 수행 여부: [] 여 [] 부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, 제55조 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